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정부의 공유림 확대사업에 부응하고 사유림의 집단 단지화로 효율적 산림경영 관리를 기하고자 골프장 설치로 산림 기능을 상실한 사유림과 대면적의 사유림을 교환하고자 하는것으로서 골프장 부지로 대부되어 있는 사유림 중 골프장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산동면 신당리 산7-1번지 외 10필 198,918㎡, 산동면 인덕리 산 33-1번지외 1필 35,504㎡ 합계 234,422㎡와 골프장 업주인(주)구마개발소유의 도개면 다곡리 산48번지 549,818㎡ 산동면 백현리 산 150-5 외 2필 210,661㎡, 장천면 상림리 산 110번지 102,991㎡, 합계 863,470㎡의 사유림과 교환하고 교환차액으로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었 습니다.

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정부의 공유림 확대 사업에 부응하고 교환대상 사유림이 산림기능을 잃었으며, 교환 취득 대상 사유림이 대면적의 사유림과 인접되어 사유림의 집단화로 산림경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 부 상정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입니다.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구미시수도사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청은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출장소는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회계운영이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회계운영을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단일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자제와 환경에 유해한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5조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중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별표 1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수정 심사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표)

현행	개정 (안)	수정 (안)	비고
부과방법	부과방법	부과대상	개정(안) p4~12
구분	구분	적용법	개정(안) p13~16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근로청소년 회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조례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 등예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